

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02
----------	-----

2023. 11. 28.
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1. 3. 강남구청장(의약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(2023. 11. 28.)
“수정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보건행정과장 : 오선미)

가. 제안이유

- 강남구립 노인전문병원의 명칭과 소재지를 명확히 하고, 관련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명시 및 이 법에 따른 공공요양병원 수탁자 자격조건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관련 상위법 명시(안 제1조)
- 강남구 노인전문병원의 명칭 및 소재지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시하고자 함
(안 제2조)
- 관련 상위법에 따라 공공요양병원의 수탁자 자격조건을 개정(확대)하고자 함(안 제5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치매관리법」 제16조의3(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)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○ 기타

-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- 입법예고(2023.10.6.~2023.10.26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분석평가 제외대상임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성수)

- 의약과가 제출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대상 각 조문별 인용 및 근거 법률 등을 추가보완하고,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데, 주요 목적이 있음.
- 현행 제1조(목적)은 “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, 제35조, 「의료법」 제33조” 만 근거 법률 조문으로 제시하고 있으나, 안 제1조(목적)는 “「치매관리법」 제16조의3” 을 추가하고 기존 “강남구” 를 “서울특별시 강남구” 로 정비하려는 것임.
 - 다만 자구정비를 할 것이라면, 제출된 안의 내용 중 “「치매관리법」 제16조의3” 을 띄어쓴 것으로 보여 이를 붙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, 기존 “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, 제35조” 의 표기는 “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 및 제35조” 로 “및” 이라는 연결 부사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.
- 안 제2조(명칭 및 위치)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의 명칭을 “강남구립 행복요양원” 으로 하고, 위치는 “강남구 현릉로590길 60(세곡동521)” 로 정비하려는 것임.
 - 이 중 도로명길과 건물번호는 띄어 쓰는 것이 타당하나, 괄호안 “(세곡동521)” 은 띄어 쓰는 것을 다른 도서관 또는 동북합 관련 조례에서도 시행 중.
- 현행 제5조(설치 및 운영) 안 제3호 및 안 제4호는 위탁운영 가능 대상에 “지방의료원” 과 “보훈병원” 을 신설하여 추가한 것임. 다만, 이 보훈병원 일 경우에도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 제3호 병원급 의료기관이어야 함.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을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자격조건을 상위법률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며,
 - 기타 사항은 자구 정비와 관련된 것임. 안 제1조와 안 제2조 관련 띄어쓰기는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수정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수정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2.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